

비상계엄서 탄핵 가결까지 온 국민 가슴 졸인 12일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내란 수괴로서의 국헌문란 행위”

‘사적 근경’ 피하러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절차적 요건도 위반

탄핵안에 어떤 내용 담겼나

14일 국회에서 결의된 대통령(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담긴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중심으로 탄핵여부를 심리하게 돼 사실상 이번 2차 탄핵안은 의회의 공소장이나 다름없다. 탄핵안의 핵심골자는 윤 대통령이 자신이 처한 근경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고위직 세력과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했다는 것이다. 이번 탄핵안은 지난 7일 폐기된 1차 탄핵안의 일부 내용이 빠졌지만, 분량은 28페이지에서 16페이지

가 늘었다. 1차 탄핵안에서 거론됐던 탄핵 사유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재외요구권 남용 등은 생략됐다. 2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 내란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내란 수괴(우두머리)로서의 국헌문란 행위 등이다. 12·3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과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라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해야 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국가비상사태로 불만한 어떠한 이상 징후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반드시 “병력으로써” 이에 응해야만 했던 어떠한 상황도 없었다는 게 이유다. 계엄 선포는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계엄 선포 절차는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무총리를 거치는 건의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계엄선포시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계엄선포시 지체없이 국회 통고해야 하는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는 5분 만에 종료됐고, 국무위원 상당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시작 1분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고 계엄 선포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지역과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함에도 어떠한 계엄 공고도 확인되지 않으며, 관보에도 해당 공고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주장이 담겼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한 점도 탄핵안에 담겼다.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이용해 무력으로 국회를 봉쇄·진입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등 무장·폭동하고,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의결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등의 결정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다고도 했다. 내란의 공범으로는 국방부장관 김용현,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인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경찰청장 조지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등이 지목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 검토

관저 압수수색·통신영장 신청·출석 요구 등 탄력 예상
최악의 경우 대통령실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배제 못해

국수분, 강제 수사 나설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5시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향후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을 비롯해 검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금까지 조사에서 이미 내란 수괴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윤 대통령에 이들 수사기관들의 경쟁에 어떻게 대처할 지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수분이 강제수사에 나서게 되면 최악의 경우 대통령실 경호처와의 충돌까지도 빚어질 수 있다. 국수분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 요구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언·증거 등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발생 직전 경찰청장·서울청장과 윤 대통령이 만났다는 ‘안가회동’도 확인했고 회동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4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경찰청장은 비화폰(도청 방지 보안용 휴대전화)을 사용해 왔으며,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청장이 비화폰을 통해 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총 18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4명에 대해 조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날 경찰 특수단은 조지호 경

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계엄 당일 대통령 안가에서 만난 사실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A4 용지 한 장을 각각 받았다. 이를 조 청장은 찢었고, 김 청장은 버렸다고 특수단에 진술했다. 하지만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당시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특수단은 이를 증거인멸을 했다고 판단해 조사 당일 긴급체포를 했다고 설명했다. 안가 회동 당시 총 4명이 있었으며 안가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역대 경찰청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비화폰(도청 방지 보안용 휴대전화)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 주체가 경찰청이 아닌 외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을 경찰청장 집무실에만 있었고,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조 청장이 여러 차례 통화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이 대통령과 직통할 수 있는 폰으로 추정되면서 대통령이 경찰청 업무에 직접 개입할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협조가 안 돼 사실상 실패하면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할지 검토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지난 13일 청구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발부되는 등 군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 신병을 확보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국회에 특전사 병력을 보낸 박종근 특수전사령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소속 경찰들이 지난 12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연합뉴스

다. 조사를 마치고 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검·경 수사가 정점인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이더라도 직접 수사·기소가 가능하지만,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는 여전히 계속 받고 있어 직접 수사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국수분이 강제 수사를 고집할 경우 국가기관 간 대치와 충돌도 우려된다. 국수분이 윤 대통령을 대면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에 맞힐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멈추기 위한 경교 조치였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또 군 병력을 투입한 것

도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일 뿐 국회를 해산해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이외에도 마치 자신의 변론에 나선 듯 300여 명의 소규모 병력 투입, 국회 계엄 해제 후 즉시 철수, 국회 출입 허용 등을 강조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치 행위’라는 논리를 폈다. 향후 국수분만이 아니라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해 대면조사에 나서더라도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또 앞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내세워 진술 일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여기에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도 압수수색, 체포 등 제약 요소로 꼽힌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경호법)’에 의거해 보호를 받는 윤 대통령이 국수분과 검찰 수사를 아예 거부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 이렇게 될 경우 국가기관들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두고 맞설 수 있다는 것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윤석열 탄핵 일정	
12월 3일	22:23 윤석열 대통령 심야 긴급 담화 발표 '비상계엄 선포'
	23:25 계엄사령관에 육군대장 박인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발표
12월 4일	00:07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
	00:49 국회 본회의 개의
	01:01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계엄령 선포 무효"
	04:30 정부 국무회의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발표
	14:43 야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12월 5일	13:30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장관 등 8명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죄 고발
12월 6일	09:50 이재명 "윤석열, 국가내란 범죄 수괴... 수사·체포·구금·기소·처벌 절차 밟아야"
	23:18 국민의힘 비상의총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유지"
12월 7일	10:00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2선 후퇴"
	21:26 윤 대통령 탄핵안 폐기 투표 참여 195명 '투표 불성립'
12월 12일	09:42 윤 대통령 4차 담화 "계엄, 통치행위"
	14:00 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발의
12월 14일	16:00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설명 및 투표 개시
	17:00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탄핵안 투표 참여 300명 중 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효 8